

남양주시 고시 제2025-36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13-192호(2013.7.5.), 제2015-100호(2015.6.5.), 제2022-145호(2022.7.13.), 제2022-248호(2022.11.15.)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기해제된 지역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인접 토지이용 상충해소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용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09. 04.

남 양 주 시 장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713,136.8	-	2,713,136.8	-	
주거지역	소계	2,595,463	증) 117,673.8	2,713,136.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595,463	증) 117,673.8	2,713,136.8	100.0	
녹지지역	소계	117,673.8	감) 117,673.8	-	-	
	자연녹지지역	117,673.8	감) 117,673.8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2,595,463	증) 108,301.8	2,703,764.8	100.0	지구단위 42개소
		자연녹지지역	108,301.8	감) 108,301.8	—	—	
어룡골	103	제1종일반주거지역	55,794	증) 3,472	59,266	100.0	
		자연녹지지역	3,472	감) 3,472	—	—	
무대1	105	제1종일반주거지역	54,055	증) 2,119	56,174	100.0	
		자연녹지지역	2,119	감) 2,119	—	—	
미아리	108	제1종일반주거지역	62,328	증) 1,484	63,812	100.0	
		자연녹지지역	1,484	감) 1,484	—	—	
덕바위	109	제1종일반주거지역	58,818	증) 3,217.8	62,035.8	100.0	
		자연녹지지역	3,217.8	감) 3,217.8	—	—	
논골1	110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837	증) 7,452	136,289	100.0	
		자연녹지지역	7,452	감) 7,452	—	—	
논골2	111	제1종일반주거지역	35,915	증) 58	35,973	100.0	
		자연녹지지역	58	감) 58	—	—	
논골3	112	제1종일반주거지역	34,575	증) 839	35,414	100.0	
		자연녹지지역	839	감) 839	—	—	
역촌1	113	제1종일반주거지역	50,534	증) 2,080	52,614	100.0	
		자연녹지지역	2,080	감) 2,080	—	—	
역촌2	114	제1종일반주거지역	37,932	증) 1,068	39,000	100.0	
		자연녹지지역	1,068	감) 1,068	—	—	
외미음	115	제1종일반주거지역	58,441	증) 1,204	59,645	100.0	
		자연녹지지역	1,204	감) 1,204	—	—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내미읍	116	제1종일반주거지역	61,131	증) 2,312	63,443	100.0	
		자연녹지지역	2,312	감) 2,312	-	-	
석실	117	제1종일반주거지역	48,086	증) 1,056	49,142	100.0	
		자연녹지지역	1,056	감) 1,056	-	-	
어룡	126	제1종일반주거지역	78,635	증) 3,455	82,090	100.0	
		자연녹지지역	3,455	감) 3,455	-	-	
문용1	127	제1종일반주거지역	46,000	증) 3,799	49,799	100.0	
		자연녹지지역	3,799	감) 3,799	-	-	
잔고개	128	제1종일반주거지역	30,198	증) 1,903	32,101	100.0	
		자연녹지지역	1,903	감) 1,903	-	-	
이곡	129	제1종일반주거지역	83,145	증) 2,590	85,735	100.0	
		자연녹지지역	2,590	감) 2,590	-	-	
삼화1	130	제1종일반주거지역	37,244	증) 1,181	38,425	100.0	
		자연녹지지역	1,181	감) 1,181	-	-	
삼화3	131	제1종일반주거지역	41,977	증) 3,601	45,578	100.0	
		자연녹지지역	3,601	감) 3,601	-	-	
웃말	132	제1종일반주거지역	35,226	증) 510	35,736	100.0	
		자연녹지지역	510	감) 510	-	-	
안말	133	제1종일반주거지역	42,338	증) 1,003	43,341	100.0	
		자연녹지지역	1,003	감) 1,003	-	-	
글개울	134	제1종일반주거지역	79,081	증) 3,413	82,494	100.0	
		자연녹지지역	3,413	감) 3,413	-	-	
대동	135	제1종일반주거지역	99,522	증) 10,292	109,814	100.0	
		자연녹지지역	10,292	감) 10,292	-	-	
목식	136	제1종일반주거지역	43,517	증) 2,602	46,119	100.0	
		자연녹지지역	2,602	감) 2,602	-	-	
양지마을	137	제1종일반주거지역	89,732	증) 1,803	91,535	100.0	
		자연녹지지역	1,803	감) 1,803	-	-	
구석마을1	138	제1종일반주거지역	76,220	증) 3,424	79,644	100.0	
		자연녹지지역	3,424	감) 3,424	-	-	
앞술막	139	제1종일반주거지역	75,886	증) 2,384	78,270	100.0	
		자연녹지지역	2,384	감) 2,384	-	-	
마산석포	140	제1종일반주거지역	44,864	증) 874	45,738	100.0	
		자연녹지지역	874	감) 874	-	-	
왕자궁	141	제1종일반주거지역	32,824	증) 459	33,283	100.0	
		자연녹지지역	459	감) 459	-	-	
진안삼거리	142	제1종일반주거지역	48,271	증) 3,685	51,956	100.0	
		자연녹지지역	3,685	감) 3,685	-	-	
구봉	144	제1종일반주거지역	67,758	증) 4,187	71,945	100.0	
		자연녹지지역	4,187	감) 4,187	-	-	
두촌1	145	제1종일반주거지역	249,504	증) 6,320	255,824	100.0	
		자연녹지지역	6,320	감) 6,320	-	-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재	151	제1종일반주거지역	38,908	증) 4,193	43,101	100.0	
		자연녹지지역	4,193	감) 4,193	—	—	
웃말	152	제1종일반주거지역	31,555	증) 48	31,603	100.0	
		자연녹지지역	48	감) 48	—	—	
땀골	153	제1종일반주거지역	47,765	증) 3,632	51,397	100.0	
		자연녹지지역	3,632	감) 3,632	—	—	
웃송능	156	제1종일반주거지역	29,720	증) 2,722	32,442	100.0	
		자연녹지지역	2,722	감) 2,722	—	—	
적성골	157	제1종일반주거지역	67,567	증) 2,411	69,978	100.0	
		자연녹지지역	2,411	감) 2,411	—	—	
별말	161	제1종일반주거지역	43,467	증) 1,263	44,730	100.0	
		자연녹지지역	1,263	감) 1,263	—	—	
본진관	162	제1종일반주거지역	62,693	증) 343	63,036	100.0	
		자연녹지지역	343	감) 343	—	—	
비각	163	제1종일반주거지역	24,399	증) 2,269	26,668	100.0	
		자연녹지지역	2,269	감) 2,269	—	—	
동촌	164	제1종일반주거지역	129,157	증) 4,045	133,202	100.0	
		자연녹지지역	4,045	감) 4,045	—	—	
전도치	165	제1종일반주거지역	43,495	증) 2,665	46,160	100.0	
		자연녹지지역	2,665	감) 2,665	—	—	
와촌	167	제1종일반주거지역	88,349	증) 864	89,213	100.0	
		자연녹지지역	864	감) 864	—	—	

다. 기타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372	—	9,372	100.0	GB 해제 경계선 관통대지 50개소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9,372	9,372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372	감) 9,372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03	남양주시 금곡동 307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472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으로 용도지역 변경
105	남양주시 금곡동 493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119	150% 이하	180% 이하	
10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8-8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484	150% 이하	180% 이하	
109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01-5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217.8	150% 이하	180% 이하	
110	남양주시 별내동 71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7,452	120% 이하	150% 이하	
111	남양주시 별내동 558-8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8	150% 이하	180% 이하	
112	남양주시 별내동 653-5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39	150% 이하	180% 이하	
113	남양주시 삼패동 365-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80	150% 이하	180% 이하	
114	남양주시 삼패동 290-38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68	150% 이하	180% 이하	
115	남양주시 수석동 19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04	150% 이하	180% 이하	
116	남양주시 수석동 22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312	150% 이하	180% 이하	
117	남양주시 수석동 4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56	150% 이하	180% 이하	
126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72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455	150% 이하	180% 이하	
127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95-1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799	150% 이하	180% 이하	
128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060-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903	150% 이하	180% 이하	
129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4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90	150% 이하	180% 이하	
130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309-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81	150% 이하	180% 이하	
131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56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601	150% 이하	180% 이하	
132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407-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10	150% 이하	180% 이하	
133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51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3	150% 이하	180% 이하	
134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85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413	150% 이하	180% 이하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35	남양주시 와부읍 울석리 485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292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으로 용도지역 변경
136	남양주시 와부읍 울석리 5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02	150% 이하	180% 이하	
137	남양주시 와부읍 울석리 748-2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3	150% 이하	180% 이하	
138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32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424	150% 이하	180% 이하	
139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649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384	150% 이하	180% 이하	
140	남양주시 이패동 333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74	150% 이하	180% 이하	
141	남양주시 이패동 567-19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59	150% 이하	180% 이하	
142	남양주시 일패동 170-1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685	150% 이하	180% 이하	
144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75-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187	150% 이하	180% 이하	
145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721-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320	150% 이하	180% 이하	
151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16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193	150% 이하	180% 이하	
152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297-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8	150% 이하	180% 이하	
153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50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632	150% 이하	180% 이하	
156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27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722	150% 이하	180% 이하	
157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88-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411	150% 이하	180% 이하	
161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426-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63	150% 이하	180% 이하	
162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81-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43	150% 이하	180% 이하	
16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685-3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269	150% 이하	180% 이하	
164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196-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45	120% 이하	150% 이하	
165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70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65	150% 이하	180% 이하	
167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500-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64	150% 이하	180% 이하	

나. 기타지역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남양주시 금곡동 162-6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98	20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으로 용도지역 변경
-	남양주시 금곡동 162-108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162-11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7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162-69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2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162-96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172-2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2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203-7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205-22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205-13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7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205-15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92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618-1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663-1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53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663-2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45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663-3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2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663-4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46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663-6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13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678-21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0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700-2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2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700-3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2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700-72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6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701-1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1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704-1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6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717-5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79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717-12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7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717-15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40	200% 이하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남양주시 금곡동 산25-6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751	20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으로 용도지역 변경
-	남양주시 금곡동 산67-27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	200% 이하	
-	남양주시 금곡동 산135-14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770	200% 이하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26-4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5	200% 이하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37-5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4	200% 이하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37-12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	200% 이하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81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18	200% 이하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85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80	200% 이하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227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19	200% 이하	
-	남양주시 지금동 산103-108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7	200% 이하	
-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205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42	200% 이하	
-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100-7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16 ¹⁾	200% 이하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125-5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	200% 이하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24-5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	200% 이하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24-6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3	200% 이하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24-29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7	200% 이하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24-25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3	200% 이하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24-3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7	200% 이하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767-1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	200% 이하	
-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70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7	200% 이하	
-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71-2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5	200% 이하	
-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86-3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	200% 이하	
-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88-1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5	200% 이하	
-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29-106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	200% 이하	
-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29-112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200% 이하	

1) 당초 별도의 필지였던 100-7(93㎡), 101-7(223㎡)번지가 100-7번지로 합필되었음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시범취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0	논골1	남양주시 별내동 710 일원	128,837	증) 7,452	136,289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변경	164	동촌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196-1 일원	129,157	증) 4,045	133,202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2) GB해제취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03	어룡골	남양주시 금곡동 307 일원	55,794	증) 3,472	59,266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변경	105	무대1	남양주시 금곡동 493 일원	54,055	증) 2,119	56,174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변경	108	미아리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8-8 일원	62,328	증) 1,484	63,812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변경	109	넉바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01-5 일원	58,818	증) 3,217.8	62,035.8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변경	111	논골2	남양주시 별내동 558-8 일원	35,915	증) 58	35,973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12	논골3	남양주시 별내동 653-5 일원	34,575	증) 839	35,414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13	역촌1	남양주시 삼패동 365-2 일원	50,534	증) 2,080	52,614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변경	114	역촌2	남양주시 삼패동 290-38 일원	37,932	증) 1,068	39,000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15	외미음	남양주시 수석동 190 일원	58,441	증) 1,204	59,645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변경	116	내미음	남양주시 수석동 220 일원	61,131	증) 2,312	63,443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변경	117	석실	남양주시 수석동 40 일원	48,086	증) 1,056	49,142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26	어룡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720 일원	78,635	증) 3,455	82,090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변경	127	문용1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95-14 일원	46,000	증) 3,799	49,799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28	잔고개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060-4 일원	30,198	증) 1,903	32,101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9	이곡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41 일원	83,145	증) 2,590	85,735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변경	130	삼화1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309-2 일원	37,244	증) 1,181	38,425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31	삼화3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56 일원	41,977	증) 3,601	45,578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32	웃말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407-2 일원	35,226	증) 510	35,736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33	안말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512 일원	42,338	증) 1,003	43,341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34	글개울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850 일원	79,081	증) 3,413	82,494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변경	135	대동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485 일원	99,522	증) 10,292	109,814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변경	136	목식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52 일원	43,517	증) 2,602	46,119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37	양지마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748-24 일원	89,732	증) 1,803	91,535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변경	138	구석마을1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320 일원	76,220	증) 3,424	79,644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변경	139	앞술막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649 일원	75,886	증) 2,384	78,270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변경	140	마산석포	남양주시 이패동 333 일원	44,864	증) 874	45,738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변경	141	왕자궁	남양주시 이패동 567-19 일원	32,824	증) 459	33,283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42	진안삼거리	남양주시 일패동 170-10 일원	48,271	증) 3,685	51,956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변경	144	구봉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75-4 일원	67,758	증) 4,187	71,945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변경	145	두촌1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721-2 일원	249,504	증) 6,320	255,824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변경	151	고재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162 일원	38,908	증) 4,193	43,101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52	웃말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297-2 일원	31,555	증) 48	31,603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53	뱀골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500 일원	47,765	증) 3,632	51,397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56	웃송능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27 일원	29,720	증) 2,722	32,442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57	적성골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88-1 일원	67,567	증) 2,411	69,978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변경	161	별말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426-1 일원	43,467	증) 1,263	44,730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62	본진관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81-2 일원	62,693	증) 343	63,036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63	비각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685-3 일원	24,399	증) 2,269	26,668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65	전도치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702 일원	43,495	증) 2,665	46,160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변경	167	와촌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500-1 일원	88,349	증) 864	89,213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1) 시범취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변경)사유	결정(변경)사유	비고
변경	110	논골1	○구역계 변경 - 면적 = 128,837㎡ → 136,289㎡ 증) 7,452㎡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변경	164	동촌	○구역계 변경 - 면적 = 129,157㎡ → 133,202㎡ 증) 4,045㎡		

2) GB해제취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변경)사유	결정(변경)사유	비고
변경	103	어룡골	○구역계 변경 - 면적 = 55,794㎡ → 59,266㎡ 증) 3,472㎡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변경	105	무대1	○구역계 변경 - 면적 = 54,055㎡ → 56,174㎡ 증) 2,119㎡		
변경	108	미아리	○구역계 변경 - 면적 = 62,328㎡ → 63,812㎡ 증) 1,484㎡		
변경	109	넉바위	○구역계 변경 - 면적 = 58,818㎡ → 62,035.8㎡ 증) 3,217.8㎡		
변경	111	논골2	○구역계 변경 - 면적 = 35,915㎡ → 35,973㎡ 증) 58㎡		
변경	112	논골3	○구역계 변경 - 면적 = 34,575㎡ → 35,414㎡ 증) 839㎡		
변경	113	역촌1	○구역계 변경 - 면적 = 50,534㎡ → 52,614㎡ 증) 2,080㎡		
변경	114	역촌2	○구역계 변경 - 면적 = 37,932㎡ → 39,000㎡ 증) 1,068㎡		
변경	115	외미읍	○구역계 변경 - 면적 = 58,441㎡ → 59,645㎡ 증) 1,204㎡		
변경	116	내미읍	○구역계 변경 - 면적 = 61,131㎡ → 63,443㎡ 증) 2,312㎡		
변경	117	석실	○구역계 변경 - 면적 = 48,086㎡ → 49,142㎡ 증) 1,056㎡		
변경	126	어룡	○구역계 변경 - 면적 = 78,635㎡ → 82,090㎡ 증) 3,455㎡		
변경	127	문용1	○구역계 변경 - 면적 = 46,000㎡ → 49,799㎡ 증) 3,799㎡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변경)사유	결정(변경)사유	비고
변경	128	잔고개	○구역계 변경 - 면적 = 30,198㎡ → 32,101㎡ 증) 1,903㎡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변경	129	이곡	○구역계 변경 - 면적 = 83,145㎡ → 85,735㎡ 증) 2,590㎡		
변경	130	삼화1	○구역계 변경 - 면적 = 37,244㎡ → 38,425㎡ 증) 1,181㎡		
변경	131	삼화3	○구역계 변경 - 면적 = 41,977㎡ → 45,578㎡ 증) 3,601㎡		
변경	132	웃말	○구역계 변경 - 면적 = 35,226㎡ → 35,736㎡ 증) 510㎡		
변경	133	안말	○구역계 변경 - 면적 = 42,338㎡ → 43,341㎡ 증) 1,003㎡		
변경	134	글개울	○구역계 변경 - 면적 = 79,081㎡ → 82,494㎡ 증) 3,413㎡		
변경	135	대동	○구역계 변경 - 면적 = 99,522㎡ → 109,814㎡ 증) 10,292㎡		
변경	136	목식	○구역계 변경 - 면적 = 43,517㎡ → 46,119㎡ 증) 2,602㎡		
변경	137	양지마을	○구역계 변경 - 면적 = 89,732㎡ → 91,535㎡ 증) 1,803㎡		
변경	138	구석마을1	○구역계 변경 - 면적 = 76,220㎡ → 79,644㎡ 증) 3,424㎡		
변경	139	앞술막	○구역계 변경 - 면적 = 75,886㎡ → 78,270㎡ 증) 2,384㎡		
변경	140	마산석포	○구역계 변경 - 면적 = 44,864㎡ → 45,738㎡ 증) 874㎡		
변경	141	왕자궁	○구역계 변경 - 면적 = 32,824㎡ → 33,283㎡ 증) 459㎡		
변경	142	진안삼거리	○구역계 변경 - 면적 = 48,271㎡ → 51,956㎡ 증) 3,685㎡		
변경	144	구봉	○구역계 변경 - 면적 = 67,758㎡ → 71,945㎡ 증) 4,187㎡		
변경	145	두촌1	○구역계 변경 - 면적 = 249,504㎡ → 255,824㎡ 증) 6,320㎡		
변경	151	고재	○구역계 변경 - 면적 = 38,908㎡ → 43,101㎡ 증) 4,193㎡		
변경	152	웃말	○구역계 변경 - 면적 = 31,555㎡ → 31,603㎡ 증) 48㎡		
변경	153	뱀골	○구역계 변경 - 면적 = 47,765㎡ → 51,397㎡ 증) 3,632㎡		
변경	156	웃송능	○구역계 변경 - 면적 = 29,720㎡ → 32,442㎡ 증) 2,722㎡		
변경	157	적성골	○구역계 변경 - 면적 = 67,567㎡ → 69,978㎡ 증) 2,411㎡		
변경	161	별말	○구역계 변경 - 면적 = 43,467㎡ → 44,730㎡ 증) 1,263㎡		
변경	162	본진관	○구역계 변경 - 면적 = 62,693㎡ → 63,036㎡ 증) 343㎡		
변경	163	비각	○구역계 변경 - 면적 = 24,399㎡ → 26,668㎡ 증) 2,269㎡		
변경	165	전도치	○구역계 변경 - 면적 = 43,495㎡ → 46,160㎡ 증) 2,665㎡		
변경	167	와촌	○구역계 변경 - 면적 = 88,349㎡ → 89,213㎡ 증) 864㎡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42개소]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없음) - 수록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최소 및 최대 개발규모 (변경없음)

1) 시범취락(논골1, 동촌)

위 치	계 획 내 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용지	○ 최소개발규모 : 150㎡ 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한 주택호수 산정 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예외 ② 기존 토지의 경우 최소개발규모를 상회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최소개발 규모에 미달되는 토지는 예외 ○ 최대개발규모 : 1,000㎡
	○ 필지분할 : 300㎡ 이상 필지 (단, 인접필지와 합병을 위한 분할로서 분할후 남은 토지면적 및 합병 토지면적이 최소개발면적(150㎡) 이상인 경우는 예외)

2) GB해제취락

① 어룡골 등 34개소¹⁾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계획	최소 개발규모	○ 150㎡ 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한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예외 ② 기존 토지의 경우 최소개발규모를 상회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최소 개발규모에 미달되는 토지는 예외
	최대 개발규모	○ 1,000㎡
필지분할		○ 300㎡ 이상 필지 (단, 인접필지와 합병을 위한 분할로서 분할후 남은 토지면적 및 합병 토지면적이 최소개발면적(150㎡) 이상인 경우는 예외)

1) 어룡골, 무대1, 미아리, 낙바위, 논골2, 역촌1, 역촌2, 외미읍, 내미읍, 석실, 문용1, 잔고개, 이곡, 삼화3, 웃말, 안말, 글개울, 대동, 양지마을, 구석마을1, 앞술막, 마산석포, 왕자궁, 진안삼거리, 고재, 웃말, 땀골, 웃송능, 적성골, 별말, 본진관, 비각, 전도치, 와촌

② 논골3 등 6개소²⁾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계획	최소 개발규모	○ 150㎡ 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한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예외 ② 기존 토지의 경우 최소개발규모를 상회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최소 개발규모에 미달되는 토지는 예외 ③ 경계선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남양주시 공고 제2012-1319호, 2012년 09월 28일) 당시 입안 대상이었으나 해제되지 못한 토지는 예외로 함 (단, ②에서 ③의 경우는 남양주시 건축조례 제26조 규모 이상의 경우에 한함)
	최대 개발규모	○ 1,000㎡
필지분할		○ 300㎡ 이상 필지 (단, 인접필지와 합병을 위한 분할로서 분할후 남은 토지면적 및 합병 토지면적이 최소개발면적(150㎡) 이상인 경우는 예외)

2) 논골3, 어룡, 삼화1, 목식, 구봉, 두촌1

■ 공동개발 (변경)

1) 시범취락(논골1, 동촌)(변경)

① 논골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H-1	①	396	·별내동 782, 784-11	공동개발 권장	
	② (변경)	399	·별내동 782-1, 782-3, 784-15, 산130	공동개발 권장	
H-2	①	411	·별내동 784-13, 784-14, 784-1, 784-15	공동개발 권장	
	②	294	·별내동 779-2, 780	공동개발 권장	
	③	294	·별내동 779-1	-	
	④	707	·별내동 654-21, 785-3, 785-4	공동개발 권장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H-3	①	508	·별내동 654-7, 654-21	공동개발 권장		
	②	539	·별내동 777, 778	공동개발 권장		
	③	503	·별내동 654-15, 654-20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72, 772-2	필지분할		
	④	595	·별내동 776, 776-2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72, 772-2	필지분할		
	⑤	463	·별내동 671-5	-		
	⑥	579	·별내동 654-17, 671, 671-3	공동개발 권장		
	⑦	424	·별내동 771-1, 771-3	공동개발 권장		
	⑧	323	·별내동 673-1, 673-2, 785-5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1-1	필지분할		
	⑨	468	·별내동 677, 678, 679, 679-1, 676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1-1	필지분할		
	⑩	561	·별내동 670, 670-1, 669-2	공동개발 권장		
	⑪	469	·별내동 672	-		
	⑫	406	·별내동 654-18, 671-2	공동개발 권장		
	⑬	525	·별내동 654-3	-		
	⑭	316	·별내동 669-1	-		
	⑮	326	·별내동 669-2, 680, 657-2	공동개발 권장		
	⑯	553 (변경)	·별내동 681, 681-1, 682	공동개발 권장		
	⑰	480	·별내동 683, 684, 686-5, 686-6	공동개발 권장		
	⑱	193	·별내동 686-7	-		
	⑲	208	·별내동 686-2, 686-4	공동개발 권장		
	⑳	414	·별내동 685, 686-3, 686-8	공동개발 권장		
	㉑	175	·별내동 686-9, 691-1	공동개발 권장		
	㉒	809	·별내동 657-9, 657-10	공동개발 권장		
	㉓	950	·별내동 657-3	-		
H-4	①	224	·별내동 780	-		
	②	579	·별내동 784-16, 782-2, 782-1, 산130	공동개발 권장		
	③	539	·별내동 754, 753, 산129-3	공동개발 권장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④	384	·별내동 755-2, 756	공동개발 권장			
	⑤	360	·별내동 755-1	-			
	⑥	201	·별내동 781-1	-			
	⑦	384	·별내동 781, 779-1	공동개발 권장			
	⑧	552	·별내동 770-1	-			
	⑨	512	·별내동 770-3, 770-4	공동개발 권장			
	⑩	539	·별내동 757, 748-1, 785-5	공동개발 권장			
	⑪	403	·별내동 758	-			
	⑫	378	·별내동 759	-			
	⑬	333	·별내동 770-2, 770-7	공동개발 권장			
	⑭	450	·별내동 769, 770-5, 770-6	공동개발 권장			
	⑮	419	·별내동 768	-			
	⑯	493	·별내동 765, 766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85-5	필지분할			
	⑰	381	·별내동 767	-			
	⑱	370	·별내동 674	-			
	⑲	214	·별내동 764	-			
	⑳	552	·별내동 675, 691-1	공동개발 권장			
	H-5	①	468	·별내동 748-1, 752-2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②	342	·별내동 752-1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48-1				필지분할			
③		539	·별내동 751	-			
④		198	·별내동 750	-			
⑤		401	·별내동 785-5, 748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48-1	필지분할			
⑥		321	·별내동 760, 761, 762, 763, 785-5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48-1	필지분할			
⑦		228	·별내동 746	-			
⑧		271	·별내동 745	-			
⑨		393	·별내동 744-1	-			
⑩		387	·별내동 744-2	-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⑪	285	·별내동 693-22, 693-24, 693-25, 693-26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1-1	필지분할			
	⑫	244	·별내동 732-1, 732-2	공동개발 권장			
	⑬	305	·별내동 693-21, 693-23, 693-41, 687-5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1-1, 693-33	필지분할			
	⑭	160	·별내동 693-19, 693-20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3-33	필지분할			
	⑮	612	·별내동 693-34, 693-35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3-33, 731-1, 731-2	필지분할			
	⑯	307	·별내동 729-7, 729-5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31-1, 731-2, 729-6	필지분할			
	⑰	578	·별내동 729-3, 729-7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31-1, 729-6	필지분할			
	⑱	401	·별내동 729-1, 산132-2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31-1, 728-2	필지분할			
	⑲	240	·별내동 729-2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31-1, 728-2	필지분할			
	㉔	368	·별내동 748-1, 752-2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H-6	①	213	·별내동 687-2, 687-5	공동개발 권장		
		②	177	·별내동 687-6, 687-7	공동개발 권장		
③		461	·별내동 687-4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87-8	필지분할			
④		291	·별내동 687-9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87-8	필지분할			
⑤		177	·별내동 693-18, 693-33	공동개발 권장			
⑥		616	·별내동 688	－			
⑦		472	·별내동 687-11, 687-12, 688-3, 689	공동개발 권장			
⑧		772	·별내동 688-2, 690-8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88-1		필지분할				
⑨	691	·별내동 689-2, 690-4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88-1	필지분할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⑩	510	·별내동 730-1, 730-2, 730-4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⑪	513	·별내동 730-1, 730-2, 730-4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⑫	280	·별내동 693-16, 693-17	공동개발 권장		
	⑬	262	·별내동 693-14, 693-15, 693-28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3-1	필지분할		
	⑭	359	·별내동 693-12, 693-13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3-1	필지분할		
	⑮	466	·별내동 692-3, 692-4	공동개발 권장		
	⑯	991	·별내동 690-1	-		
	⑰	991	·별내동 692-1, 692-2	공동개발 권장		
	⑱	409	·별내동 691	필지분할		
	⑲	439	·별내동 691	필지분할		
	⑳	590	·별내동 690-3, 690-7, 691-2	공동개발 권장		
㉑	412	·별내동 731-1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30-3, 730-4	필지분할			
㉒	465	·별내동 731-1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30-3, 730-4	필지분할			
H-7	①	675	·별내동 659, 659-3, 659-4, 662-1	공동개발 권장		
	②	244	·별내동 660, 661-2	공동개발 권장		
H-8	①	258	·별내동 660, 661-3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61-4	필지분할		
	② (변경)	254	·별내동 661-1, 661-4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61-4	필지분할		
	③	490 (변경)	·별내동 653-34, 693-49, 653-50, 694-2, 694-3	공동개발 권장		
	④	441	·별내동 653-3, 653-13, 693-6, 694-1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1-1, 693-7	필지분할		
	⑤	367	·별내동 653-2	-		
⑥	743	·별내동 653-10, 653-52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53-11, 653-28	필지분할			
⑦	536	·별내동 643-17	필지분할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⑧	675	·별내동 643-10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43-17	필지분할		
	⑨	451	·별내동 653-12, 643-18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53-11, 653-28	필지분할		
	⑩	664	·별내동 643-6, 646-5, 653-15, 693-8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53-16, 653-17, 693-9	필지분할		
	⑪	342 (변경)	·별내동 693-1, 693-10, 693-29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53-16, 653-17, 693-9	필지분할		
⑫ (신설)	194	·별내동 653-60, 654-4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1-1	필지분할			
⑬ (신설)	329	·별내동 653-4	—			
⑭ (신설)	560	·별내동 625-35, 산86-1	공동개발 권장			
H-9	①	404	·별내동 692-1, 692-5, 693-47	공동개발 권장		
	②	474	·별내동 692-10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3-46	필지분할		
	③	686	·별내동 693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3-42	필지분할		
	④	675	·별내동 693-45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3-1, 693-31	필지분할		
	⑤	804	·별내동 691-1, 693-11, 693-39, 693-41, 693-43, 693-44, 702-4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3-1, 693-31			필지분할			
⑥	474	·별내동 697-5, 702-2, 702-3, 702-8				
⑦	594	·별내동 692-3, 692-6, 693-1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3-31	필지분할			
⑧	744	·별내동 693-31, 693-46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H-10	①	737	·별내동 621-43, 623-5, 623-1, 623-6, 623-4	공동개발 권장		
H-11	①	300	·별내동 623-3, 605, 605-6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21-11	필지분할		
	② (변경)	514	·별내동 621-43, 621-13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21-11	필지분할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H-12	①	549	·별내동 626, 623-4, 623-3, 625-1	공동개발 권장		
	②	567	·별내동 624-2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25-2	필지분할		
	③	458	·별내동 625-2	-		
	④ (신설)	483	·별내동 624-2, 625-24, 625-25	공동개발 권장		
H-13	①	242	·별내동 693-5, 695-5, 695-7, 695-12	공동개발 권장		
	②	871	·별내동 625-7, 625-26, 646-3, 693-2, 693-4, 693-38, 695-8, 산85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25-6	필지분할		
	③	380	·별내동 625-34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25-6, 625-5	필지분할		
	④	358	·별내동 625-20, 625-22	공동개발 권장		
	⑤	518	·별내동 625-21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25-5, 625-6	필지분할		
	⑥	733	·별내동 625-5, 625-6, 625-14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⑦	201	·별내동 625-3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25-14			필지분할			
H-14	①	845	·별내동 604-32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04-14, 625-37	필지분할		
	②	331	·별내동 604-13	-		
	③	237	·별내동 604-9, 695-16	공동개발 권장		
	④	511	·별내동 695-3, 695-21, 695-23, 695-28, 695-29, 695-30	공동개발 권장		
	⑤	325	·별내동 625-10, 625-36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25-2	필지분할		
	⑥	282	·별내동 624, 624-1, 624-2	공동개발 권장		
	⑦	713	·별내동 625-8, 625-9, 625-24, 625-25	공동개발 권장		
	⑧	521	·별내동 625-2	필지분할		
	⑨	427	·별내동 625-2	필지분할		
⑩	396	·별내동 604-31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04-32	필지분할			
⑪	437	·별내동 625-2	필지분할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H-15	①	578	·별내동 605-4, 606	공동개발 권장		
	②	908	·별내동 604-1, 604-24, 604-27	공동개발 권장		
	③	506	·별내동 604-3, 604-5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04-2	필지분할		
	④	443	·별내동 604-7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04-2	필지분할		
	⑤	752	·별내동 604-8, 604-20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25-39	필지분할		
⑥	574	·별내동 604-11	필지분할			
⑦	521 (변경)	·별내동 695-1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04-11, 604-33, 625-39	필지분할			
H-16	①	448	·별내동 603, 603-10	공동개발 권장		
	②	497	·별내동 588-17, 588-21	공동개발 권장		
	③	720	·별내동 588-1, 588-19	공동개발 권장		
	④	304	·별내동 588-3, 588-8	공동개발 권장		
	⑤	254	·별내동 588-7, 588-10, 588-34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03-1	필지분할		
	⑥	269	·별내동 588-9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03-1			필지분할			
H-17	①	317	·별내동 712, 572	공동개발 권장		
	②	517	·별내동 575-2, 575-1	공동개발 권장		
	③	316	·별내동 575-4	—		
H-18	①	599	·별내동 573, 715-3	공동개발 권장		
	②	754	·별내동 574-1, 574-2, 696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③	763	·별내동 574-1, 574-2, 696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④	606	·별내동 574-1, 574-2, 696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⑤	830	·별내동 697-2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6, 697-1, 697-5	필지분할		
	⑥	538	·별내동 697-1, 697-5, 697-6, 697-8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⑦	430	·별내동 697-7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697-1, 697-6, 697-8			필지분할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⑧	297	·별내동 697-1, 697-3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⑨	548	·별내동 693-1, 697-5, 702-1, 702-6, 702-8 ·별내동 697-1, 697-3	-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H-19	①	414	·별내동 708-1, 708-11, 708-12	공동개발 권장		
	②	613	·별내동 708-9 ·별내동 708-4, 715-3	-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③	639	·별내동 709, 709-1, 712 ·별내동 573, 715-3	-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④	555	·별내동 573	필지분할		
	⑤	523	·별내동 708-5 ·별내동 708-4	-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⑥	726	·별내동 710, 710-2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⑦	560	·별내동 710	필지분할		
	⑧	405	·별내동 698, 697-7, 698-1	공동개발 권장		
	⑨	758	·별내동 699-1, 700-1, 701-4, 702-1	공동개발 권장		
	⑩	546	·별내동 708-7, 710-2	공동개발 권장		
H-20	①	967	·별내동 704-2	필지분할		
	②	945	·별내동 704-2, 705-2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③	731	·별내동 705-2	필지분할		
H-21	①	530	·별내동 727-1, 731-1	공동개발 권장		
	②	750	·별내동 726-6, 726-11	공동개발 권장		
	③	775	·별내동 726-1, 726-16	공동개발 권장		
	④	446	·별내동 726-15 ·별내동 726-10	-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⑤	391	·별내동 726-8 ·별내동 726-10	-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⑥	425	·별내동 726-12	-		
	⑦	659	·별내동 726-3, 726-14, 731-1	공동개발 권장		
	⑧	491	·별내동 726-7, 726-13	공동개발 권장		
H-22	①	660	·별내동 704-5	-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H-23	①	377	·별내동 715-3, 719-3, 719-9	필지분할		
H-24	①	492	·별내동 719-2, 719-3	공동개발 권장		
H-25	① (변경)	732	·별내동 713-1, 714-1	공동개발 권장		
	② (신설)	301	·별내동 569-4, 569-1	공동개발 권장		
H-26	①	676	·별내동 717-3, 564-1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17-1	필지분할		
	②	986	·별내동 717-2, 719-3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717-1	필지분할		
	③	392	·별내동 716-1, 716-2, 716-3, 716-4	공동개발 권장		
	④ (신설)	475	·별내동 716-2, 716-4, 716-1	공동개발 권장		
⑤ (신설)	598	·별내동 569-3	-			
H-27	①	659	·별내동 567-5, 567-6, 567-3	공동개발 권장		
	②	577	·별내동 567-4, 568-1, 568-5	공동개발 권장		
H-28	①	810	·별내동 563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564, 564-1, 564-5, 723-12	필지분할		
	②	638	·별내동 564, 564-1, 564-5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④	375	·별내동 565-4	-	공동개발 권장	
			·별내동 565-3	필지분할		
	⑤	534	·별내동 566-3	-		
	⑥	953	·별내동 565-1, 565-3, 566-1	필지분할		
	⑦	676	·별내동 565-1, 565-3, 566-1	필지분할		
⑧	572	·별내동 565-1, 565-3, 566-1	필지분할			
H-29	① (변경)	838	·별내동 621, 621-100	공동개발 권장		
H-30 (신설)	①	187	·별내동 625-4, 625-14, 626-1	공동개발 권장		

※ 빨간색 글씨는 금회 변경 또는 신설되는 사항임

② 동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H-1	①	343	·내곡리 312	필지분할		
	②	335	·내곡리 312	필지분할		
	③	371	·내곡리 312-1	필지분할		
	④	265	·내곡리 312-1	필지분할		
	⑤	535	·내곡리 315-4, 315-6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⑥	288	·내곡리 313	-		
	⑦	360	·내곡리 315-4, 315-6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⑧	448	·내곡리 315-1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14, 315-2	필지분할		
	⑨	271	·내곡리 315-3	-		
	⑩	770	·내곡리 314, 315-2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⑪ (신설)	117	·내곡리 309, 309-1	공동개발 권장			
H-2	①	670	·내곡리 303-9	-		
	②	471	·내곡리 303-4, 303-6, 303-12	공동개발 권장		
	③	360	·내곡리 303-5	-		
	④	470	·내곡리 303-1	-		
	⑤	332	·내곡리 303-3, 303-8, 303-11	공동개발 권장		
	⑥	360	·내곡리 303-7	필지분할		
	⑦	473	·내곡리 303-2, 산50-1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03-7	필지분할		
⑧ (신설)	404	·내곡리 303, 303-14	공동개발 권장			
H-3	①	411	·내곡리 361-4, 361-5, 361-10, 361-11	공동개발 권장		
	②	331	·내곡리 361-12, 361-3	공동개발 권장		
	③	575	·내곡리 361-4, 361-13, 362-1, 362-2, 362-3, 362-4, 362-5	공동개발 권장		
	④	352	·내곡리 361-2, 361-14	공동개발 권장		
	⑤	399	·내곡리 361-1, 361-6, 361-8, 361-16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97-11, 300-1	필지분할		
	⑥	297	·내곡리 296-3, 296-4, 296-11, 363-18, 363-19, 363-48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97-11, 300-1	필지분할		
	⑦ (변경)	611	·내곡리 296-2, 296-5, 296-8	공동개발 권장		
	⑧	361	·내곡리 363-14	필지분할		
⑨	462	·내곡리 363-14	필지분할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⑩	422	·내곡리 363-12, 363-14, 363-24, 363-26, 363-42	공동개발 권장		커뮤 니 시 설 용 지
	⑪	513	·내곡리 363-2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63-14, 363-26	필지분할		
	⑫ (신설)	513	·내곡리 309, 309-1	공동개발 권장		
H-4	①	373	·내곡리 323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24-1, 324-5	필지분할		
	②	310	·내곡리 325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24-1, 324-5	필지분할		
	③	278	·내곡리 317-5, 324-2	공동개발 권장		
	④	387	·내곡리 317-4, 317-6, 317-10, 317-12	공동개발 권장		
	⑤	512	·내곡리 317-2, 317-7	공동개발 권장		
	⑥	293	·내곡리 320-3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20	필지분할		
	⑦	303	·내곡리 320-3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20	필지분할		
	⑧	248	·내곡리 317-1, 319, 318	공동개발 권장		
	⑨	341	·내곡리 302-9	-		
	⑩	311	·내곡리 302-10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02-8	필지분할		
	⑪	317	·내곡리 302-11, 302-20	공동개발 권장		
	⑫	362	·내곡리 302-18, 302-16, 302-19, 302-17	공동개발 권장		
	⑬	199	·내곡리 302-14, 302-15, 302-22	공동개발 권장		
	⑭	258	·내곡리 302-6	-		
	⑮	342	·내곡리 302-12, 302-7	공동개발 권장		
	⑯	410	·내곡리 302-8	필지분할		
	⑰	579	·내곡리 301-4	-		
	⑱	537	·내곡리 301-1, 301-6	공동개발 권장		
	⑲	282	·내곡리 301-3	-		
	⑳	513	·내곡리 301-2, 302-1	공동개발 권장		
	㉑	365	·내곡리 302-2	단독필지		
	㉒	355	·내곡리 302-5, 302-4, 361-11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00-1	필지분할		
	㉓	459	·내곡리 302-3, 361-9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00-1, 361-8, 361-18	필지분할		
	㉔	548	·내곡리 297-10	-		
	㉕	486	·내곡리 297-9, 298	공동개발 권장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㉕	587	·내곡리 297-11, 297-7, 297-8	공동개발 권장		
	㉖	436	·내곡리 293-4, 297-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00-1	필지분할		
	㉗	462	·내곡리 295-2, 297-3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00-1	필지분할		
	㉘	298	·내곡리 295-3, 297-1, 297-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00-1			필지분할			
H-5	①	550	·내곡리 327-6, 327-2	공동개발 권장		
	②	348	·내곡리 327-1	-		
	③	812	·내곡리 327-8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27-4	필지분할		
	④	288	·내곡리 328	-		
	⑤	428	·내곡리 327-3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27-4	필지분할		
	⑥	265	·내곡리 326-2	-		
	⑦	275	·내곡리 326-1, 326-3	공동개발 권장		
	⑧	979	·내곡리 327-7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22-1	필지분할		
	⑨	581	·내곡리 산27-1, 산27-4	공동개발 권장		
	⑩	619	·내곡리 300-1, 322, 322-2, 322-3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22-1	필지분할		
	⑪	422	·내곡리 321-4, 321-3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산27-4	필지분할		
	⑫	303	·내곡리 321-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산27-4	필지분할		
	⑬	312	·내곡리 321-1	-		
	⑭	313	·내곡리 300	필지분할		
	⑮	376	·내곡리 300	필지분할		
	⑯	450	·내곡리 299-5	-		
	⑰	461	·내곡리 299	-		
	⑱	197	·내곡리 299-3	-		
	㉑	367	·내곡리 293-4	필지분할		
	㉒	399	·내곡리 293-4	필지분할		
	㉓	402	·내곡리 산25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93-4	필지분할		
	㉔	476	·내곡리 293-4	필지분할		
	㉕	317	·내곡리 293-4	필지분할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㉔	542	·내곡리 293-4	필지분할		
	㉕	388	·내곡리 295-2	-		
	㉖	157	·내곡리 295-4, 300-1	공동개발 권장		
	㉗	577	·내곡리 293-7	-		
	㉘	455	·내곡리 293-3, 293-6	공동개발 권장		
	㉙	374	·내곡리 293-1, 293-2, 293-5, 300-1	공동개발 권장		
	㉚	351	·내곡리 293-1	필지분할		
	㉛	331	·내곡리 293-1	필지분할		
	㉜	320	·내곡리 293-1	필지분할		
	㉝	509	·내곡리 327	필지분할		
	㉞	698	·내곡리 305-1, 328, 329-1, 329-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27	필지분할		
	㉟	214	·내곡리 295-3	-		
	㊱	213	·내곡리 299-2	-		
	㊲ (신설)	512	·내곡리 294, 363-1, 363-2	공동개발 권장		
H-6	①	737	·내곡리 135-12, 135-13, 135-1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137-9, 141-1, 300-1	필지분할		
	②	404	·내곡리 136-1	-		
	③	767	·내곡리 137-9, 137-7, 138-10	공동개발 권장		커뮤니티 시설 용지
㉔ (신설)	477	·내곡리 135-16, 135-85, 135-86, 135-87	공동개발 권장			
H-7	①	351	·내곡리 291	-		
	②	516	·내곡리 292, 290-8	공동개발 권장		
	③	406	·내곡리 290-7	-		
	④	364	·내곡리 290-6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00-1	필지분할		
	⑤	321	·내곡리 290-1, 290-10, 290-11, 290-12, 290-13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300-1	필지분할		
	⑥	359	·내곡리 290-2, 290-14, 290-15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90-3	필지분할		
	⑦	474	·내곡리 290-4, 290-16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90-3	필지분할		
	⑧	199	·내곡리 290-5	-		
	⑨	406	·내곡리 210-17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10-16			필지분할			
⑩	543	·내곡리 210-7, 210-16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⑪	267	·내곡리 210-22	-		
	⑫	429	·내곡리 210-10, 210-1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10-7	필지분할		
	⑬	641	·내곡리 210-7	필지분할		
	⑭	222	·내곡리 210-6, 210-23	공동개발 권장		
	⑮	324	·내곡리 210-4, 210-5, 210-8	공동개발 권장		
	⑯	490	·내곡리 210-3	-		
	⑰	504	·내곡리 210-1, 210-2, 210-31	공동개발 권장		
	⑱	462	·내곡리 209-4, 209-3, 209-5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08-1	필지분할		
	⑲	390	·내곡리 212, 213-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08-1	필지분할		
⑳	472	·내곡리 211-1, 211-5	공동개발 권장			
㉑	204	·내곡리 290-9	-			
H-8	①	703	·내곡리 287, 287-2, 287-4	공동개발 권장		
	③	405	·내곡리 288, 289	공동개발 권장		
	④	375	·내곡리 284	필지분할		
	⑤	397	·내곡리 284	필지분할		
	⑥	695	·내곡리 210-17, 210-18, 210-29	공동개발 권장		
H-9	①	328	·내곡리 283	필지분할		
	②	337	·내곡리 283	필지분할		
	③	308	·내곡리 211-1, 211-2, 211-4, 211-5, 산23	공동개발 권장		
H-10	①	675	·내곡리 137-5, 137-6, 137-7, 138-10	공동개발 권장		
	②	230	·내곡리 137-1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138-7	필지분할		
	③	257	·내곡리 137-4, 138-7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④	359	·내곡리 137-1, 137-2, 137-3, 138-4, 138-5, 138-6, 207-5, 208-3, 209-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137-4			필지분할			
H-11	①	555	·내곡리 138-12, 138-20, 138-21, 138-22, 138-23	공동개발 권장		
	②	470	·내곡리 138-14, 138-15, 140-3, 140-18	공동개발 권장		
H-12	①	662	·내곡리 191-3, 191-6, 191-7, 208-3	공동개발 권장		
	②	654	·내곡리 191-8	필지분할		
	③	570	·내곡리 191-1, 192-3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④	446	·내곡리 191-10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191-1, 192-3			필지분할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⑤	751	·내곡리 195-5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196-1	필지분할		
	⑥	229	·내곡리 195-4, 195-8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08-3	필지분할		
	⑦	254	·내곡리 194-5	-		
	⑧	356	·내곡리 197, 198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196-1	필지분할		
	⑨	468	·내곡리 194-4, 194-9, 194-10, 194-11, 195-3, 199-2	공동개발 권장		
⑩	617	·내곡리 141-1, 194-1, 194-3, 208-1	공동개발 권장			
H-13	①	420	·내곡리 138-2, 138-3, 139, 191-8, 208-3	공동개발 권장		
	②	364	·내곡리 207-1, 208-3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③	501	·내곡리 196-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191-8, 196-1, 208-3	필지분할		
	④	223	·내곡리 196-3	-		
	⑤	311	·내곡리 196-1	필지분할		
	⑥	362	·내곡리 196-1	필지분할		
	⑦	310	·내곡리 196-1	필지분할		
	⑧	441	·내곡리 198	필지분할		
	⑨	436	·내곡리 198	필지분할		
	⑩	416	·내곡리 200, 203	공동개발 권장		
	⑪	281	·내곡리 204, 205, 214-1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08-3	필지분할		
	⑫	368	·내곡리 206-2, 213-6, 214-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08-3, 213-3	필지분할		
	⑬	698	·내곡리 206-1	-		
	⑭	721	·내곡리 206-3	-		
	⑮	425	·내곡리 207-1	필지분할		
	⑯	484	·내곡리 207-1	필지분할		
	⑰	375	·내곡리 207-1	필지분할		
	⑱	487	·내곡리 207-2, 207-4, 208, 209-1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08-3, 213-3	필지분할		
497		·내곡리 198	필지분할			
H-14	①	646	·내곡리 209-3, 209-4, 213-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13	필지분할		
	②	432	·내곡리 207-4, 208-3, 209-6, 213-1	공동개발 권장		
	⑤	906	·내곡리 213-7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13	필지분할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⑥	699	·내곡리 209-1, 214-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13-6	필지분할		
	⑦	720	·내곡리 산21-5, 216-4	공동개발 권장		
	⑧	553	·내곡리 213-6	필지분할		
	⑨	359	·내곡리 208-3, 214-1	공동개발 권장		
	⑩	428	·내곡리 216-3, 216-8	공동개발 권장		
	⑪	285	·내곡리 208-3, 216, 216-2, 216-7, 218	공동개발 권장		
	⑫	572	·내곡리 216-1, 216-5	공동개발 권장		
	⑬	269	·내곡리 216-2, 216-9	공동개발 권장		
	⑭	267	·내곡리 221, 221-1	공동개발 권장		
	⑮	539	·내곡리 222	-		
	⑯	696	·내곡리 225, 226	공동개발 권장		
	⑰	407	·내곡리 227	필지분할		
	⑱	442	·내곡리 23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27, 232-1	필지분할		
	⑲	341	·내곡리 228-3, 228-4	필지분할		
	⑳	487	·내곡리 228	필지분할		
	㉑	188	·내곡리 228-2	-		
	㉒	309	·내곡리 229-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29, 229-1	필지분할		
	㉓	342	·내곡리 229, 229-1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㉔	536	·내곡리 229, 229-1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㉕	461	·내곡리 230-12	-		
	㉖	445	·내곡리 230-10, 259-1	공동개발 권장		
	㉗	479	·내곡리 230-7, 230-11	공동개발 권장		
	㉘	363	·내곡리 230-5	-		
	㉙	436	·내곡리 230-4	-		
	㉚	355	·내곡리 230-3	-		
	㉛	444	·내곡리 230-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산7	필지분할		
	㉜	569	·내곡리 230-1, 230-1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산7	필지분할		
	㉝	258	·내곡리 262-10	필지분할		
	㉞	210	·내곡리 262-10	필지분할		
	㉟	410	·내곡리 262-3, 262-6, 262-7, 262-8, 262-9, 산7-7, 산7-10, 산7-19	공동개발 권장		
H-15	①	371	·내곡리 208-1, 218	공동개발 권장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②	320	·내곡리 219-1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20	필지분할		
	③	373	·내곡리 219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20	필지분할		
	④	458	·내곡리 238, 239-2	공동개발 권장		
	⑤	373	·내곡리 224-1	-		
	⑥	446	·내곡리 237-1, 237, 236-1, 235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38-1	필지분할		
	⑦	325	·내곡리 225, 238-1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38-1	필지분할		
	⑧	272	·내곡리 233	-		
	⑨	277	·내곡리 234, 241-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38-1	필지분할		
⑩	199	·내곡리 231-1, 231-3, 231-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38-1	필지분할			
⑪	249	·내곡리 232	-			
H-16	①	306	·내곡리 200, 202	공동개발 권장		
	②	335	·내곡리 199, 199-1, 199-3, 199-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199-2	필지분할		
	③	743	·내곡리 243, 199, 199-1, 199-2	공동개발 권장		커뮤 니티 시설 용지
	④	635	·내곡리 201, 208-3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38, 238-1, 243	필지분할		
	⑤	553	·내곡리 239-2, 239-3, 240, 241-11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38, 238-1, 243	필지분할		
	⑥	760	·내곡리 199, 24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43	필지분할		
	⑦	391	·내곡리 243, 243-1	필지분할	공동개발 권장	
	⑧	311	·내곡리 241-5, 242-3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43	필지분할		
⑨	651	·내곡리 238-1, 241-7, 241-8, 241-9, 241-10, 241-13	공동개발 권장			
⑩	716	·내곡리 241-2, 241-1, 241-3, 241-12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28-1, 243-1	필지분할			
⑪	319	·내곡리 252-12	-			
⑫	388	·내곡리 252-13	-			
⑬	390	·내곡리 245-2, 245-6	공동개발 권장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⑭	315	·내곡리 245-1, 246-1, 251-6, 251-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59-1	필지분할		
	⑮	331	·내곡리 252-10, 252-1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59-1	필지분할		
	⑯	434	·내곡리 252-11	-		
	⑰	315	·내곡리 252-9, 252-8	공동개발 권장		
	⑱	448	·내곡리 198, 199, 199-2	공동개발 권장		
H-17	①	434	·내곡리 194-1, 208-1, 24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43-1	필지분할		
	②	452	·내곡리 228-1, 243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43-1, 245-4	필지분할		
	③	306	·내곡리 245-3, 245-5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45-4	필지분할		
	④	425	·내곡리 246-3, 246-11	공동개발 권장		
	⑤	348	·내곡리 251-3	필지분할		
	⑥	253	·내곡리 251-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51-3	필지분할		
	⑦	316	·내곡리 252-5, 252-6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52-4	필지분할		
	⑧	387	·내곡리 252-4	필지분할		
	⑨	393	·내곡리 252-1, 252-2, 252-3, 252-7, 252-8, 253	공동개발 권장		
	⑩	354	·내곡리 254-1, 254-2	공동개발 권장		
	⑪	378	·내곡리 255	-		
	⑫	636	·내곡리 259, 259-6, 259-7	공동개발 권장		
	⑬	266	·내곡리 258, 258-2	공동개발 권장		
	⑭	260	·내곡리 256, 256-1, 256-3, 256-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59-8	필지분할		
	⑮	384	·내곡리 250-1, 251-1, 251-2, 251-11, 251-12, 251-13, 251-14	-	공동개발 권장	
			·내곡리 259-8	필지분할		
	⑯	158	·내곡리 251-10, 251-15	공동개발 권장		
	⑰	276	·내곡리 246-4, 246-10	공동개발 권장		
	⑱	291	·내곡리 141-1, 246-5, 246-9	공동개발 권장		
	⑲	495	·내곡리 260-2	-		
	⑳	196	·내곡리 261-2, 261-6	공동개발 권장		

※ 빨간색 글씨는 금회 변경 또는 신설되는 사항임

2) GB해제취락(변경)

① 어룡골 등 34개소¹⁾

◆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내 용	○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들은 공동으로 건축을 권장함 ○ 공동개발 권장이 준수된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함. 단, 인센티브 부여는 획지간 공동개발이 권장되어 있는 모든 획지가 공동건축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됨

◆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내 용	○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들은 공동으로 건축을 권장함 ○ 공동개발 권장이 준수된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함. 단, 인센티브 부여는 획지간 공동개발이 권장되어 있는 모든 획지가 공동건축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됨	도면변경

주) 공동개발(권장) 변경 : 조서내용 변경없음, 도면 일부변경 (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

1) 어룡골, 무대1, 미아리, 너바위, 논골2, 역촌1, 역촌2, 외미읍, 내미읍, 석실, 문용1, 잔고개, 이곡, 삼화3, 웃말, 안말, 글개울, 대동, 양지마을, 구석마을1, 앞술막, 마산석포, 왕자궁, 진안삼거리, 고재, 웃말, 뱀골, 웃송능, 적성골, 별말, 본진관, 비각, 전도치, 와촌

② 논골3 등 6개소²⁾

◆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내 용	○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들은 공동으로 건축을 권장함 ○ 공동개발 권장이 준수된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함. 단, 인센티브 부여는 획지간 공동개발이 권장되어 있는 모든 획지가 공동건축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됨

◆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내 용	○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들은 공동으로 건축을 권장함 ○ 공동개발 권장이 준수된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함. 단, 인센티브 부여는 획지간 공동개발이 권장되어 있는 모든 획지가 공동건축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됨	도면변경

주) 공동개발(권장) 변경 : 조서내용 변경없음, 도면 일부변경 (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

2) 논골3, 어룡, 삼화1, 목식, 구봉, 두촌1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시범취락(변경없음)

① 논골1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0	주거 용지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시설은 8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 중 1층 및 2층에 한하여 적용)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1주택당 5가구 이하) - 제2호 공동주택 중 나목 연립주택(1동당 6세대 이하), 다목 다세대주택(1동당 5세대 이하)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조업소의 경우, 별표1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만 허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마목 동·식물원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목 교육원, 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위생서비스(산업) 분야 제외)에 한함), 바목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라목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0% 이하 ○ 상한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형 태	○ 지붕 - 단독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박공지붕, 모임지붕, 한방향 경사지붕)을 권장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토록 하며, 눈썹지붕은 규제 - 경사지붕 물마는 최소 20° ~ 최대 40°로 한정 - 옥상부분은 옥외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옥탑·냉각탑의 건축설비는 도로변과 인근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시각차폐물을 설치 ○ 담장 - 담장의 높이는 과도한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1m 이하로 제한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
		건축선	○ 건축선 - 가로의 개방감 및 보도의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도로(소로)변에 건축한계선 지정 (폭원 8m이상 도로는 1m, 8m미만 도로는 1.5m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이용하며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보차혼용통로 -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의 가구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4m의 건축한계선 지정

※ 제조업소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중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계, 운송장비의 업종 불허

※ 건축물 허용용도 중 제조업소, 연구소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고시 제2022-434호(2022.11.24) 별표1 참조

② 동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64	주거 용지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시설은 8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 중 1층 및 2층에 한하여 적용)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1주택당 5가구 이하) - 제2호 공동주택 중 나목 연립주택(1동당 6세대 이하), 다목 다세대주택(1동당 5세대 이하)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조업소의 경우, 별표1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만 허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마목 동·식물원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목 교육원, 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위생서비스(산업) 분야 제외)에 한함), 바목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라목 액화 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0% 이하 ○ 상한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형 태	○ 지붕 - 단독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박공지붕, 모임지붕, 한방향 경사지붕)을 권장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토록 하며, 눈썹지붕은 규제 - 경사지붕 물매는 최소 20° ~ 최대 40°로 한정 - 옥상부분은 옥외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옥탑·냉각탑의 건축설비는 도로변과 인근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시각차폐물을 설치 ○ 담장 - 담장의 높이는 과도한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1m 이하로 제한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
		건축선	○ 건축선 - 가로의 개방감 및 보도의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도로(소로)변에 건축한계선 지정 (폭원 8m이상 도로는 1m, 8m미만 도로는 1.5m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이용하며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보차혼용통로 -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의 가구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4m의 건축한계선 지정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조업소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중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계, 운송장비의 업종 불허함

※ 건축물 허용용도 중 제조업소, 연구소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고시 제2022-434호(2022.11.24) 별표1 참조

2) GB해제취락(변경없음)

① 어룡골 등 34개소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03,105, 108,109, 111,113, 114,115, 116,117, 127,128, 129,131, 132,133, 134,135, 137,138, 139,140, 141,142, 151,152, 153,156, 157,161, 162,163, 165,167	어룡골 등 34개 취락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용 도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시설은 8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 중 1층 및 2층에 한하여 적용)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 (1주택당 5가구 이하) ○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나목 연립주택(1동당 6세대 이하), 다목 다세대 주택(1동당 5세대 이하) ○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조업소의 경우, 별표1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만 허용 ○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마목 동·식물원 ○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목 교육원, 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위생서비스 (산업) 분야 제외)에 한함), 바목 도서관 ○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라목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 시설 ○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불허용도] ○ 권장용도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03,105, 108,109, 111,113, 114,115, 116,117, 127,128, 129,131, 132,133, 134,135, 137,138, 139,140, 141,142, 151,152, 153,156, 157,161, 162,163, 165,167	어룡골 등 34개 취락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상한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배 치	—
		형 태	○ 지붕 — 단독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박공지붕, 모임지붕, 한방향 경사지붕)을 권장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토록 하며, 눈썹지붕은 규제 — 경사지붕 물매는 최소 20°~ 최대 40°로 한정 — 옥상부분은 옥외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옥탑·냉각탑의 건축 설비는 도로변과 인근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시각차폐물을 설치 ○ 담장 — 담장의 높이는 과도한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1m 이하로 제한 — 친환경적 요소인 토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 담장을 권장하여 경관제고 및 방법효과를 증대
		색 채	—
		건축선	○ 건축선 — 가로의 개방감 및 보도의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도로(소로)변에 건축한 계선 지정 (폭원 8m이상 도로는 1m, 8m미만 도로는 1.5m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이용하며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보차혼용도로 —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의 가구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4m의 건축한계선 지정

※ 가설건축물의 경우도 위의 용도기준을 적용

※ 제조업소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중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계, 운송장비의 업종 불허하고, 제조업소 용도를 영위하기 위한 창고시설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설건축물에 한함)

※ 건축물 허용용도 중 제조업소, 연구소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고시 제2021-506호(2021.12.16) 별표1 참조

② 논골3 등 6개소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2,126, 130,136, 144,145	논골3 등 6개 취락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용 도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시설은 8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 중 1층 및 2층에 한하여 적용)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 (1주택당 5가구 이하) ○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나목 연립주택(1동당 6세대 이하), 다목 다세대주택(1동당 5세대 이하) ○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종교집회장, 바목 사진관, 아목 휴게음식점, 자목 일반음식점, 차목 동물병원, 카목 학원, 타목 독서실, 파목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바닥 면적 합계 500㎡미만에 한함), 하목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너목 제조업소(별도로 정하는 일부 업종 제외), 수리점(이곡취락에 한함) ○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마목 동·식물원 ○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목 교육원, 마목 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위생서비스(산업) 분야 제외)에 한함), 바목 도서관 ○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불허용도] ○ 권장용도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2,126, 130,136, 144,145	논골3 등 6개 취락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상한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처마높이 14.4m)
		배 치	—
		형 태	○ 지붕 — 단독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박공지붕, 모임지붕, 한방향 경사지붕)을 권장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토록 하며, 눈썹지붕은 규제 — 경사지붕 물매는 최소 20°~ 최대 40°로 한정 — 옥상부분은 옥외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옥탑·냉각탑의 건축 설비는 도로변과 인근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시각차폐물을 설치 ○ 담장 — 담장의 높이는 과도한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1m 이하로 제한 — 친환경적 요소인 토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 담장을 권장하여 경관제고 및 방법효과를 증대
		색 채	—
		건축선	○ 건축선 — 가로의 개방감 및 보도의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도로(소로)변에 건축한 계선 지정 (폭원 8m이상 도로는 1m, 8m미만 도로는 1.5m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이용하며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보차혼용도로 —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의 가구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4m의 건축한계선 지정

※ 가설건축물의 경우도 위의 용도기준을 적용

※ 제조업소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중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계, 운송장비의 업종 불허하고, 제조업소 용도를 영위하기 위한 창고시설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설건축물에 한함)

※ 건축물 허용용도 중 제조업소, 연구소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고시 제2019-352호(2019.08.14) 별표1 참조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시범취락(논골1, 동촌)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 주요도로 교차지점, 가각부분에서 10m 이내(필지 모형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
부설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9조 적용

2) GB해제취락

① 어룡골 등 34개소¹⁾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 주요도로 교차지점, 가각부분에서 10m 이내(필지 모형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
부설주차장의 설치	○ 남양주시 주차장조례 적용

1) 어룡골, 무대1, 미아리, 너바위, 논골2, 역촌1, 역촌2, 외미읍, 내미읍, 석실, 문용1, 잔고개, 이곡, 삼화3, 웃말, 안말, 글개울, 대동, 양지마을, 구석마을1, 앞술막, 마산석포, 왕자궁, 진안삼거리, 고재, 웃말, 뱀골, 웃송능, 적성골, 별말, 본진관, 비각, 전도지, 외촌

② 논골3 등 6개소²⁾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 주요도로 교차지점, 가각부분에서 10m 이내(필지 모형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
부설주차장의 설치	○ 남양주시 주차장조례 적용

2) 논골3, 어룡, 삼화1, 목식, 구봉, 두촌1

■ 경관계획 (변경없음)

1) 시범취락(논골1, 동촌)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 내 조경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남양주시 건축 조례 규정을 5% 강화하여 확보 -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이 2천㎡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20%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대지 내 공지	○ 가로의 개방감 및 보도의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소로)변에 건축한계선 지정(폭원 8m이상 도로는 1m, 8m미만 도로는 1.5m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이용하며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는 필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폭 4m의 건축 한계선 지정

2) GB해제취락

① 어룡골 등 34개소¹⁾

계 획 내 용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남양주시 건축 조례 규정을 5% 강화하여 확보 -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이 2천㎡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20% 이상 - 연면적이 1천㎡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 연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 시행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확보할 경우는 초과비용에 따라 기준용적률 완화규정에 의거하여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

1) 어룡골, 무대1, 미아리, 낙바위, 논골2, 역촌1, 역촌2, 외미음, 내미음, 석실, 문용1, 잔고개, 이곡, 삼화3, 웃말, 안말, 글개울, 대동, 양지마을, 구석마을1, 앞술막, 마산석포, 왕자궁, 진안삼거리, 고개, 웃말, 뱀골, 웃송능, 적성골, 별말, 본진관, 비각, 전도치, 와촌

② 논골3 등 6개소²⁾

계 획 내 용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남양주시 건축 조례 규정을 5% 강화하여 확보	
－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이 2천㎡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20% 이상	
－ 연면적이 1천㎡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 연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 시행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확보할 경우는 초과비용에 따라 기준용적률 완화규정에 의거하여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	

2) 논골3, 어룡, 삼화1, 목식, 구봉, 두촌1

■ 건축물 외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시범취락(논골1, 동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담 장	○ 높이 1m 이하로 제한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	
지 붕	○ 단독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박공지붕, 모임지붕, 한방향 경사지붕)을 권장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토록 하며, 눈썹지붕은 규제 ○ 경사지붕 물매는 최소 20°~ 최대 40°로 한정 ○ 옥상부분은 옥외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옥탑·냉각탑의 건축설비는 도로변과 인근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시각차폐물을 설치하여야 함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전면공지 부분은 보도로 이용하도록 하며,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옥외광고물	○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적용	

2) GB해제취락

① 어룡골 등 34개소¹⁾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담 장	- 높이 1m 이하로 제한 - 환경친화형 (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등) 유도로 도시경관성, 방법효과 극대화로 주거 가치성 제고	
지 붕	- 단독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박공지붕, 모임지붕, 한방향 경사지붕)을 권장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토록 하며, 눈썹지붕은 규제 - 경사지붕 물매는 최소 20°~ 최대 40°로 한정 - 옥상부분은 옥외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옥탑·냉각탑의 건축설비는 도로변과 인근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시각차폐물을 설치하여야 함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전면공지 부분은 보도로 이용하도록 하며,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옥외광고물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적용	

1) 어룡골, 무대1, 미아리, 낙바위, 논골2, 역촌1, 역촌2, 외미읍, 내미읍, 석실, 문용1, 잔고개, 이곡, 삼화3, 웃말, 안말, 글개울, 대동, 양지마을, 구석마을1, 앞술막, 마산석포, 왕자궁, 진안삼거리, 고재, 웃말, 뱀골, 웃송능, 적성골, 별말, 본진관, 비각, 전도치, 와촌

② 논골3 등 6개소²⁾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담 장	- 높이 1m 이하로 제한 - 환경친화형 (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등) 유도로 도시경관성, 방법효과 극대화로 주거 가치성 제고	
지 붕	- 단독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박공지붕, 모임지붕, 한방향 경사지붕)을 권장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토록 하며, 눈썹지붕은 규제 - 경사지붕 물매는 최소 20°~ 최대 40°로 한정 - 옥상부분은 옥외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옥탑·냉각탑의 건축설비는 도로변과 인근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시각차폐물을 설치하여야 함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전면공지 부분은 보도로 이용하도록 하며,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2) 논골3, 어룡, 삼화1, 목식, 구봉, 두촌1

마.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내용 (변경없음)

1) 시범취락(논골1, 동촌)

구 분	완 화 조 건	완화내용	비고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용도 준수시	5%	○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 준수한 경우에 한함
대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 준수시	5%	○ 규정된 공동개발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 한함
	대지분할가능선 준수시	5%	—
대지안 조경에 관한 사항	시행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시	최대 5%	○ 초과하는 조경면적 1%당 용적률 1% 부여
주차장에 관한 사항	시행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시	5%	○ 시행지침 기준 외 1대 이상 추가 설치한 경우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	경사지붕 설치시	5%	—
	친환경적 담장 설치시	5%	○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 경우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우수재활용시설 설치시	5%	○ 빗물저류탱크용량(Ton) 건축면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times$ 0.02
	녹색건축 인증시	6%	○ 최우수 등급 인증시
		5%	○ 우수 등급 인증시
		4%	○ 우량 등급 인증시

2) GB해제취락

① 어룡골 등 34개소¹⁾

구 분	완 화 조 건	완화내용	비고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용도 준수시	5%	○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 준수한 경우에 한함
대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 준수시	5%	○ 규정된 공동개발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 한함
	대지분할가능선 준수시	5%	—
대지안 조경에 관한 사항	시행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시	최대 5%	○ 초과하는 조경면적 1%당 용적률 1% 부여
주차장에 관한 사항	시행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시	5%	○ 시행지침 기준 외 1대 이상 추가 설치한 경우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	경사지붕 설치시	5%	—
	친환경적 담장 설치시	5%	○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 경우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우수재활용시설 설치시	5%	○ 빗물저류탱크용량(Ton)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녹색건축 인증시	6%	○ 최우수 등급 인증시
		5%	○ 우수 등급 인증시
		4%	○ 우량 등급 인증시

1) 어룡골, 무대1, 미아리, 덕바위, 논골2, 역촌1, 역촌2, 외미음, 내미음, 석실, 문용1, 잔고개, 이곡, 삼화3, 옷말, 안말, 글개울, 대동, 양지마을, 구석마을1, 앞술막, 마산석포, 왕자궁, 진안삼거리, 고재, 옷말, 뱀골, 옷송능, 적성골, 별말, 본진관, 비각, 전도치, 와촌

② 논골3 등 6개소²⁾

구 분	완 화 조 건	완화내용	비고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용도 준수시	5%	○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 준수한 경우에 한함
대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 준수시	5%	○ 규정된 공동개발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 한함
	대지분할가능선 준수시	5%	—
대지안 조경에 관한 사항	시행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시	최대 5%	○ 초과하는 조경면적 1%당 용적률 1% 부여
주차장에 관한 사항	시행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시	5%	○ 시행지침 기준 외 1대 이상 추가 설치한 경우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	경사지붕 설치시	5%	—
	친환경적 담장 설치시	5%	○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 경우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우수재활용시설 설치시	5%	○ 빗물저류탱크용량(Ton)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녹색건축 인증시	6%	○ 최우수 등급 인증시
		5%	○ 우수 등급 인증시
		4%	○ 우량 등급 인증시

2) 논골3, 어룡, 삼화1, 목식, 구봉, 두촌1

■ 환경보전 저감방안 (신설)

1) 시범취락(논골1, 동촌)

구 분	저감방안
수환경의 보전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주기적인 도로청소 － 도로변 측구 설치 － 저영향개발기법(LID)
대기질	○ 비산먼지 저감대책 － 공사지역 및 주변지역 등에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차량의 관리(속도규제 등) － 방진망 설치 － 건설장비 분산 투입, 장비 공회전 금지 등
소음·진동	○ 공정관리 － 가급적 야간작업 억제, 주간에만 작업 실시 －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과 적정배치 － 장비불량에 따른 소음·진동의 발생억제를 위해 충분한 장비정비 및 점검 실시 － 가능한 저소음 건설기계 및 적정용량의 기계 사용 ○ 출입차량(덤프트럭 등)에 의한 소음 저감방안 － 이른 시간 및 야간운행 지양 － 주거지 통과구간은 과속주행 방지를 위해 운전자 교육 실시 ○ 건설장비 진동 저감대책 － 진동 유발이 적은 소규모 장비의 사용 및 필요 시 공법 변경 등 시행, 공사시행 시 지역주민에게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

※ 수질오염총량검토의 경우 개별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 시 할당범위 내에서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을 실시하여야함.

2) GB해제취락

① 어룡골 등 34개소¹⁾

구 분	저감방안
수환경의 보전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주기적인 도로청소 － 도로변 측구 설치 － 저영향개발기법(LID)
대기질	○ 비산먼지 저감대책 － 공사지역 및 주변지역 등에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차량의 관리(속도규제 등) － 방진망 설치 － 건설장비 분산 투입, 장비 공회전 금지 등
소음·진동	○ 공정관리 － 가급적 야간작업 억제, 주간에만 작업 실시 －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과 적정배치 － 장비불량에 따른 소음·진동의 발생억제를 위해 충분한 장비정비 및 점검 실시 － 가능한 저소음 건설기계 및 적정용량의 기계 사용 ○ 출입차량(덤프트럭 등)에 의한 소음 저감방안 － 이른 시간 및 야간운행 지양 － 주거지 통과구간은 과속주행 방지를 위해 운전자 교육 실시 ○ 건설장비 진동 저감대책 － 진동 유발이 적은 소규모 장비의 사용 및 필요 시 공법 변경 등 시행, 공사시행 시 지역주민에게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

※ 수질오염총량검토의 경우 개별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 시 할당범위 내에서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을 실시하여야함.

1) 어룡골, 무대1, 미아리, 낙바위, 논골2, 역촌1, 역촌2, 외미읍, 내미읍, 석실, 문용1, 잔고개, 이곡, 삼화3, 웃말, 안말, 글개울, 대동, 양지마을, 구석마을1, 앞술막, 마산석포, 왕자궁, 진안삼거리, 고재, 웃말, 뱀골, 웃송능, 적성골, 별말, 본진관, 비각, 전도치, 와촌

② 논골3 등 6개소²⁾

구 분	저감방안
수환경의 보전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주기적인 도로청소 - 도로변 측구 설치 - 저영향개발기법(LID)
대기질	○ 비산먼지 저감대책 - 공사지역 및 주변지역 등에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차량의 관리(속도규제 등) - 방진망 설치 - 건설장비 분산 투입, 장비 공회전 금지 등
소음·진동	○ 공정관리 - 가급적 야간작업 억제, 주간에만 작업 실시 -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과 적정배치 - 장비불량에 따른 소음·진동의 발생억제를 위해 충분한 장비정비 및 점검 실시 - 가능한 저소음 건설기계 및 적정용량의 기계 사용 ○ 출입차량(덤프트럭 등)에 의한 소음 저감방안 - 이른 시간 및 야간운행 지양 - 주거지 통과구간은 과속주행 방지를 위해 운전자 교육 실시 ○ 건설장비 진동 저감대책 - 진동 유발이 적은 소규모 장비의 사용 및 필요 시 공법 변경 등 시행, 공사시행 시 지역주민에게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

※ 수질오염총량검토의 경우 개별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 시 할당범위 내에서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을 실시하여야함.

2) 논골3, 어룡, 삼화1, 목식, 구봉, 두촌1

③ 지구단위계획구역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1)

1. 어룡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9,266	-	59,26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5,794	증) 3,472	59,266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472	감) 3,47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03	남양주시 금곡동 307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3,472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03	어룡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금곡동 307 일원	55,794	증) 3,472	59,266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03	남양주시 금곡동 307 일원	(기정) 55,794㎡ (변경) 59,266㎡ (증 3,472㎡)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1) 지구단위계획구역별 변경사항만 기재

2. 무대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6,174	—	56,17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4,055	증) 2,119	56,174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119	감) 2,119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05	남양주시 금곡동 493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119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05	무대1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금곡동 493 일원	54,055	증) 2,119	56,174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05	남양주시 금곡동 493 일원	(기정) 54,055㎡ (변경) 56,174㎡ (증 2,119㎡)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3. 미아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3,812	-	63,81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2,328	증) 1,484	63,812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484	감) 1,48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0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8-8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484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08	미아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8-8 일원	62,328	증) 1,484	63,812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0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68-8 일원	(기정) 62,328㎡ (변경) 63,812㎡ (증 1,484㎡)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4. 낙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2,035.8	-	62,035.8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8,818	증) 3,217.8	62,035.8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217.8	감) 3,217.8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09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01-5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3,217.8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09	낙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01-5 일원	58,818	증) 3,217.8	62,035.8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09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01-5 일원	(기정) 58,818㎡ (변경) 62,035.8㎡ (증 3,217.8㎡)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5. 논골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6,289	-	136,289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837	증) 7,452	136,289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452	감) 7,45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10	남양주시 별내동 71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7,452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0	논골1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별내동 710 일원	128,837	증) 7,452	136,289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10	남양주시 별내동 710 일원	(기정) 128,837㎡ (변경) 136,289㎡ (증 7,452㎡)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6. 논골2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5,973	-	35,973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5,915	증) 58	35,973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8	감) 58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11	남양주시 별내동 558-8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58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1	논골2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별내동 558-8 일원	35,915	증) 58	35,973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11	남양주시 별내동 558-8 일원	(기정) 35,915㎡ (변경) 35,973㎡ (증 58㎡)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7. 논골3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5,414	-	35,41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4,575	증) 839	35,414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39	감) 839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12	남양주시 별내동 653-5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839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2	논골3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별내동 653-5 일원	34,575	증) 839	35,414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12	남양주시 별내동 653-5 일원	(기정) 34,575㎡ (변경) 35,414㎡ (증 839㎡)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8. 역촌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2,614	-	52,61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0,534	증) 2,080	52,614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80	감) 2,08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13	남양주시 삼패동 365-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080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3	역촌1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삼패동 365-2 일원	50,534	증) 2,080	52,614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13	남양주시 삼패동 365-2 일원	(기정) 50,534㎡ (변경) 52,614㎡ (증 2,080㎡)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9. 역촌2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000	-	39,00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7,932	증) 1,068	39,000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068	감) 1,068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14	남양주시 삼패동 290-38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068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4	역촌2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삼패동 290-38 일원	37,932	증) 1,068	39,000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14	남양주시 삼패동 290-38 일원	(기정) 37,932㎡ (변경) 39,000㎡ (증 1,068㎡)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10. 외미읍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9,645	-	59,645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8,441	증) 1,204	59,645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04	감) 1,20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15	남양주시 수석동 19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204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5	외미읍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수석동 190 일원	58,441	증) 1,204	59,645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15	남양주시 수석동 190 일원	(기정) 58,441㎡ (변경) 59,645㎡ (증 1,204㎡)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11. 내미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3,443	-	63,443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1,131	증) 2,312	63,443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312	감) 2,31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16	남양주시 수석동 22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312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6	내미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수석동 220 일원	61,131	증) 2,312	63,443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16	남양주시 수석동 220 일원	(기정) 61,131㎡ (변경) 63,443㎡ (증 2,312㎡)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12. 석실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9,142	-	49,14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8,086	증) 1,056	49,142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056	감) 1,056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17	남양주시 수석동 4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056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7	석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수석동 40 일원	48,086	증) 1,056	49,142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17	남양주시 수석동 40 일원	(기정) 48,086㎡ (변경) 49,142㎡ (증 1,056㎡)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13. 어룡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2,090	-	82,09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8,635	증) 3,455	82,090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455	감) 3,45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26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72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3,455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6	어룡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720 일원	78,635	증) 3,455	82,090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26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720 일원	(기정) 78,635㎡ (변경) 82,090㎡ (증 3,455㎡)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14. 문용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9,799	-	49,799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6,000	증) 3,799	49,799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799	감) 3,799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27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95-1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3,799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7	문용1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95-14 일원	46,000	증) 3,799	49,799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27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95-14 일원	(기정) 46,000㎡ (변경) 49,799㎡ (증 3,799㎡)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15. 잔고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101	-	32,101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0,198	증) 1,903	32,101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903	감) 1,903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28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060-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903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8	잔고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060-4 일원	30,198	증) 1,903	32,101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28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060-4 일원	(기정) 30,198㎡ (변경) 32,101㎡ (증 1,903㎡)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16. 이곡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5,735	—	85,735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3,145	증) 2,590	85,735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590	감) 2,59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29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4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590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9	이곡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41 일원	83,145	증) 2,590	85,735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29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41 일원	(기정) 83,145㎡ (변경) 85,735㎡ (증 2,590㎡)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17. 삼화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8,425	-	38,425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7,244	증) 1,181	38,425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81	감) 1,18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30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309-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181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0	삼화1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309-2 일원	37,244	증) 1,181	38,425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30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309-2 일원	(기정) 37,244㎡ (변경) 38,425㎡ (증 1,181㎡)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18. 삼화3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5,578	-	45,578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1,977	증) 3,601	45,578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01	감) 3,60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31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56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3,601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1	삼화3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56 일원	41,977	증) 3,601	45,578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31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56 일원	(기정) 41,977㎡ (변경) 45,578㎡ (증 3,601㎡)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19. 웃말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5,736	-	35,73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5,226	증) 510	35,736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10	감) 51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32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407-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510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2	웃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407-2 일원	35,226	증) 510	35,736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32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407-2 일원	(기정) 35,226㎡ (변경) 35,736㎡ (증 510㎡)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20. 안말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3,341	-	43,341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2,338	증) 1,003	43,341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003	감) 1,003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33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51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003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3	안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512 일원	42,338	증) 1,003	43,341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33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512 일원	(기정) 42,338㎡ (변경) 43,341㎡ (증 1,003㎡)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21. 글개울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2,494	-	82,49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9,081	증) 3,413	82,494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413	감) 3,413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34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85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3,413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4	글개울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850 일원	79,081	증) 3,413	82,494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34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850 일원	(기정) 79,081㎡ (변경) 82,494㎡ (증 3,413㎡)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22. 대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9,814	-	109,81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99,522	증) 10,292	109,814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0,292	감) 10,29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35	남양주시 와부읍 울석리 485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0,292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5	대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울석리 485 일원	99,522	증)10,292	109,814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35	남양주시 와부읍 울석리 485 일원	(기정) 99,522㎡ (변경) 109,814㎡ (증 10,292㎡)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23. 목식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6,119	-	46,119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517	증) 2,602	46,119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602	감) 2,60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36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5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602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6	목식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52 일원	43,517	증) 2,602	46,119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36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52 일원	(기정) 43,517㎡ (변경) 46,119㎡ (증 2,602㎡)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24. 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1,535	-	91,535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9,732	증) 1,803	91,535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803	감) 1,803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37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748-2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803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7	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748-24 일원	89,732	증) 1,803	91,535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37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748-24 일원	(기정) 89,732㎡ (변경) 91,535㎡ (증 1,803㎡)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25. 구석마을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9,644	-	79,64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6,220	증) 3,424	79,644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424	감) 3,42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38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32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3,424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8	구석마을1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320 일원	76,220	증) 3,424	79,644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38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320 일원	(기정) 76,220㎡ (변경) 79,644㎡ (증 3,424㎡)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26. 앞술막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8,270	-	78,27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5,886	증) 2,384	78,270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384	감) 2,38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39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649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384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9	앞술막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649 일원	75,886	증) 2,384	78,270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39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649 일원	(기정) 75,886㎡ (변경) 78,270㎡ (증 2,384㎡)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27. 마산석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5,738	-	45,738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4,864	증) 874	45,738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74	감) 87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40	남양주시 이패동 333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874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40	마산석포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이패동 333 일원	44,864	증) 874	45,738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40	남양주시 이패동 333 일원	(기정) 44,864㎡ (변경) 45,738㎡ (증 874㎡)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28. 왕자궁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3,283	-	33,283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2,824	증) 459	33,283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59	감) 459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41	남양주시 이패동 567-19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459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41	왕자궁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이패동 567-19 일원	32,824	증) 459	33,283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41	남양주시 이패동 567-19 일원	(기정) 32,824㎡ (변경) 33,283㎡ (증 459㎡)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29. 진안삼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1,956	—	51,95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8,271	증) 3,685	51,956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85	감) 3,68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42	남양주시 일패동 170-1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3,685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42	진안삼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일패동 170-10 일원	48,271	증) 3,685	51,956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42	남양주시 일패동 170-10 일원	(기정) 48,271㎡ (변경) 51,955㎡ (증 3,685㎡)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30. 구봉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1,945	-	71,945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7,758	증) 4,187	71,945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187	감) 4,187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44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75-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4,187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44	구봉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75-4 일원	67,758	증) 4,187	71,945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44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75-4 일원	(기정) 67,758㎡ (변경) 71,945㎡ (증 4,187㎡)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31. 두촌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5,824	-	255,82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49,504	증) 6,320	255,824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320	감) 6,32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45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721-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6,320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45	두촌1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721-2 일원	249,504	증) 6,320	255,824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45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721-2 일원	(기정) 249,504㎡ (변경) 255,824㎡ (증 6,320㎡)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32. 구봉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3,101	-	43,101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8,908	증) 4,193	43,101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193	감) 4,193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51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16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4,193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51	고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162 일원	38,908	증) 4,193	43,101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51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162 일원	(기정) 38,908㎡ (변경) 43,101㎡ (증 4,193㎡)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33. 웃말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603	-	31,603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1,555	증) 48	31,603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8	감) 48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52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297-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48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52	웃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297-2 일원	31,555	증) 48	31,603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52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297-2 일원	(기정) 31,555㎡ (변경) 31,603㎡ (증 48㎡)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34. 뱀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1,397	-	51,397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7,765	증) 3,632	51,397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632	감) 3,63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53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50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3,632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53	뱀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500 일원	47,765	증) 3,632	51,397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53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500 일원	(기정) 47,765㎡ (변경) 51,397㎡ (증 3,632㎡)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35. 웃송능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442	-	32,44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9,720	증) 2,722	32,442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722	감) 2,72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56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27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722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56	웃송능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27 일원	29,720	증) 2,722	32,442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56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27 일원	(기정) 29,720㎡ (변경) 32,442㎡ (증 2,722㎡)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36. 적성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9,978	-	69,978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7,567	증) 2,411	69,978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411	감) 2,41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57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88-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411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57	적성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88-1 일원	67,567	증) 2,411	69,978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57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88-1 일원	(기정) 67,567㎡ (변경) 69,978㎡ (증 2,411㎡)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37. 별말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730	-	44,73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467	증) 1,263	44,730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63	감) 1,263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61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426-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263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61	별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426-1 일원	43,467	증) 1,263	44,730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61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426-1 일원	(기정) 43,467㎡ (변경) 44,730㎡ (증 1,263㎡)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38. 본진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3,036	-	63,03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2,693	증) 343	63,036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43	감) 343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62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81-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343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62	본진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81-2 일원	62,693	증) 343	63,036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62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81-2 일원	(기정) 62,693㎡ (변경) 63,036㎡ (증 343㎡)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39. 비각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6,668	—	26,668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4,399	증) 2,269	26,668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269	감) 2,269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6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685-3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269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63	비각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685-3 일원	24,399	증) 2,269	26,668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6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685-3 일원	(기정) 24,399㎡ (변경) 26,668㎡ (증 2,269㎡)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40. 동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3,202	-	133,20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9,157	증) 4,045	133,202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045	감) 4,04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64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196-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4,045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64	동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196-1 일원	129,157	증) 4,045	133,202	경기도고시 제2006-5167호 (2006.11.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64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196-1 일원	(기정) 129,157㎡ (변경) 133,202㎡ (증 4,045㎡)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41. 전도치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6,160	-	46,16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495	증) 2,665	46,160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665	감) 2,66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65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702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665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65	전도치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702 일원	43,495	증) 2,665	46,160	경기도고시 제2006-5117호 (2006.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65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702 일원	(기정) 43,495㎡ (변경) 46,160㎡ (증 2,665㎡)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

42. 외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9,213	-	89,213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8,349	증) 864	89,213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64	감) 86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상한	
167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500-1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864	150% 이하	180% 이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 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위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67	외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500-1 일원	88,349	증) 864	89,213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 (2006.09.2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67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500-1 일원	(기정) 88,349㎡ (변경) 89,213㎡ (증 864㎡)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관통대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도모